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29 선고 2019나1751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0. 29 선고 2019나1751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7 선고 2017가단5216144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강남

담당변호사 최종서

피고,항소인 1. D

2. E

3. F

4. G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

담당변호사 김동욱

변론 종결 2019. 9. 17

판결 선고 2019. 10. 29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7. 선고 2017가단5216144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서울 서초구 J 대 17712.2㎡ 중

가. 1.514/17718지분에 관하여,

(1) 피고 D는 피고 던에게 1998. 9. 1. 증여를 원인으로 한,

(2) 피고 표은 원고 A에게 2000. 3. 4. 매매를 원인으로 한,

나. 1.229/17718지분에 관하여, 피고 F는 원고 B에게 2001. 11. 4. 매매를 원인으로 한,

다. 0,7852/17718지분에 관하여, 피고 G은 그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H, I에게 각 2003. 4. 14.

매매를 원인으로한,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

[항소취지]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

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

피고 들은,이 사건각지분에 관한 각 매매 계약에 기한 지분이 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.

이사건 토지에는 이 ○○아파트를 위한 기계실, 전기실, 보일러시설 등이 위치하고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,원고 들이 이 ○○아파트를 매수하여 인도 받은 이상, 이사건 토지를 그지 분비율 대로 점유,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,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.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김형훈 판사 박광우